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성흠제, 홍성룡 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 제515호

다. 발의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2. 제 안 사 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제10호)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만 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 사용량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수도요금 감면 규정 및 현황

- 현행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은 수도요금을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과 같이 수도요금 감면대상 외에 감면율(30%)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표 1〉 수도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방법

감면대상(조례 제31조)	감면방법 및 감면율(시행규칙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공공목적용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아리수 음수대 설치 초·중·고 및 유치원·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정함· 월사용량에서 10m³을 감면· 전액 경감· 사용량의 20% 경감· 1회당 600원 할인·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원 이하: 200원- 2만원 이상: 1%, 총 할인액 1,000원 이하)·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20% 경감· 군부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수도감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8.2억원, 장애인시설 1.7억원, 초·중·고등학교 9.6억원 등 총 69.5억원이고, 수도요금 감면 이후 총 누적 금액은 460.2억원¹⁾에 달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100전	'11	'12	'13	'14	'15	'16	'17	'18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35,432	1,339	513	3,813	4,497	4,150	4,431	5,275	5,596	5,818
장애인 이용·수용시설	1,766	365	165	179	177	174	182	177	173	174
초·중·고교	8,823	1,009	682	871	937	923	1,135	1,287	1,017	962
합 계	46,021	2,713	1,360	4,863	5,611	5,247	5,748	6,739	6,786	6,954

2)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31조제1항제10호)

□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

-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은 0.98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를 평균 출산 연령의 고령화, 비혼 인구 및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³⁾.
-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장기전세/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하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1)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액 제외

2)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 수.

3)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2019)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산 장려 대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임.

□ 상위법 검토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⁴⁾으로서 동법 제14조(독립채산)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조례개정에 앞서 출산 담당 장려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과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수도요금 현실화율⁵⁾ 하락 문제

-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3자녀 이상 가구수는 92,852가구⁶⁾이며, 이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4) 관련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5) 요금현실화율(%) = (m³당 총괄원가 ÷ m³당 요금) × 100%

6) '18년 1월 31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구수

- 2018년 서울시의 수도요금 수익은 6,332억원, 총괄원가는 7,966억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화율의 추가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 수도요금 인상⁷⁾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표 3〉 연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이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요금현실화율(%)	105.3	99.5	97.2	96.0	93.4	92.3	87.5	89.0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요금현실화율(%)	83.0	89.0	92.0	89.1	84.5	81.7	80.7	79.5

-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명분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도요금 감면 요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12년에 9.6%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하고 있음

8) 행정안전부는 요금현실화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행정안전부 공기업과 -3610, 14.06.05)

[참고자료]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생략
-